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567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567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148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7. 2.

판결 선고 2015. 7. 23.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148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차 주위적 청구 및 관련 예비적 청구

주위적으로 2013.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차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차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나. 2차 주위적 청구 및 관련 예비적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차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차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9.자로 마쳐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를 압류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시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의료법인 D을 설립하여 위 의원의 폐업 이후 같은 장소에서 'E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및 의료법인 D이 위 각 의원을 운영하던 중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또는 구 의료급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진료비 및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2008. 10. 16.자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008. 10. 17.자 5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진료비 77,534,057원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63,219,910원을 전제로 한다)을 하였고, 의료법인 D에 대하여는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2008. 10. 16.자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135,040,980원을 전제로 한다)을 각 하였다(이하 위 5개의 처분을 모두 합하여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 및 의료법인 D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273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10. 7. '원고와 의료법인 D이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처분의 기초가 된 부당금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1차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 확정판결 후 원고가 비위행위를 하여 66,709,332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56,357,930원의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4.자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의 변경처분, 2011. 4. 21.자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 및 2011. 6. 3.자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을 하였고, 의료법인 D에 대하여는 2011. 4. 21.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 및 2011. 6. 3.자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5개의 변경처분을 모두 합하여 '2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및 의료법인 D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388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0. 25. '원고와 의료법인 D이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2차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정한 부담금액 중 일부에 잘못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2차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67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 통보를 받고 2008. 11. 17.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878,080원, 29,161,760원, 25,098,960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을 2009. 3. 31.로 정하여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5. 9.경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5. 9. 접수 제2290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1차, 2차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차, 2차 처분의 결과로 마쳐진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의 2013. 5. 9.자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인 2008. 11. 17.자 이 사건 환수처분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 스스로의 확약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해제신청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1차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1차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2차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는 피고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각 구하고, 2차 주위적으로 피고의 2008. 11. 17.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 1차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2차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환수금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각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압류등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5. 9. 접수 제22901호로 마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는,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처분을 행한 후, 다시 제3항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또는 이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 무효확인 또는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환수채무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이 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이를 무효 등 확인소송에, 같은 법 제40조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각 준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만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에 해당함에도 민사법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당초부터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인바,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소연

판사정서현

별지